

2024년도 제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1. 10.(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강태욱(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춘식, 정경오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대행
2. 전차(제2023-31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대행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제3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선출의 건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3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제3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선출의 건

- 주요내용: 전 분과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제3분과위원회의 신임 분과위원장을 호선함.
- 회의결과: 강태욱 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13건(안건번호 제2024-1호~제2024-22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1호~2호(순번 1번~2번)는 블로그 및 카페에서 음악 저작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감상평, 후기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35조의5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3호~5호(순번 3번~5번)는 블로그에 뮤지컬의 무단 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4-6호~16호(순번 6번~16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4-17호~28호(순번 17번~28번)는 블로그 및 카페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7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3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205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4-1호~205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205개의 URL 정보에 관

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31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을 전부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제3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선출의 건

- 이숙형 부장: 전임 분과위원장의 임기만료로 새로이 제3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함.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당해 위원의 임기로 함.

- B 위원: 강태욱 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추천함.

- A, C 위원: 강태욱 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동의함.

(제3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선출 안건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강태욱 위원을 제3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이숙형 부장: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태욱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형 부장: 금일 심의안건은 22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31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게시자가 자신의 생각,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블로그 및 카페에 스트리밍 형식으로 음악 저작물을 제공한 사안임. 총 2개 게시물임.

(순번 1번 및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한국 속담에 대한 본인의 소회,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음악 스트리밍 영상을 본문에 게시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악저작물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게시자 본인의 소회 및 사진 등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대부분인 점은 인정되나, 음악저작물 전체 분량을 이용하고 있는 점, 따라서 해당 음악 저작물을 합법시장에서 유료로 이용할 유인이 크게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즉,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음악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불법복제물에 대한 감상, 분석 등 직접 작성한 글 또는 직접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등 저작권 문제가 없는 저작물을 함께 게시하여 나름의 창작성 구성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 사안과 달리 볼 필요성이 있음.

순번 2번 심의대상과 같이 블로그 및 카페에 음악 스트리밍 영상을 게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임베디드 링크 원본의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아 부결한바 있으나, 사무처 조사 결과 카페에 동영상 등 파일이 필터링 없이 업로드 됨을 확인하였고, 스트리밍 영상의 제목이 게시글의 제목과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게시자가 직접 영상을 업로드한 것으로 보여, 위법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달리 판단할 여지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을 고려할 때 순번 1번~2번 모두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목적으로 게시자에게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순번 1번 내지 2번처럼 게시자가 자신의 생각,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블로그 및 카페에 스트리밍 형식으로 음악 저작물을 제공한 사안에 대하여 인용되는 저작물이 본인이 작성한 것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세밀한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임. 예컨대 영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 등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D 위원: 순번 1번, 2번 게시글에는 모두 광고가 노출되어 있는데 게시자가 직접 자신의 블로그에 광고가 보이도록 설정하는 것인지.
- 이숙형 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겠음.
- B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인용 저작물과 개인이 나름의 창작

성 구성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불법복제물과는 다르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바임. 정 위원님 의견주신 바를 더하여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범위를 넓히고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떠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번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뮤지컬 불법복제물의 교환·판매 거래글이 블로그에 게시된 사안임. 총 5개 게시물임.

(순번 3번 및 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 뮤지컬 밀캠(현상공연을 몰래 녹화하는 행위),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교환 또는 판매하고 있음. 게시물에는 게시자가 보유한 녹화물 등의 제목, 공연일, 출연자 목록 등이 다수 게시되어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며, 현장 공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교환 또는 판매를 위해 전송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현장공연 녹음·녹화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한 파일이나, 권리자에 의해 이미 영상물 또는 음반으로 고정된 DVD, OST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한 파일 모두 보호원의 시정권고 대상인 불법복제물로 판단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일반 블로그 게시물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쇼핑몰의 제품 판매 게시물과 동일하게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것임. 게시물의 내용 및 비밀댓글 개수에 비추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가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하였으며, 이러한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비추어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어 시정권고의 대상이되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경우에는 게시자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 A 위원: 뮤지컬 불법 촬영 영상의 교환 및 판매 게시물은 일반적인 블로그 게시물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쇼핑몰의 판매 게시물과 동일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촬영 및 판매중인 사안으로 저작권침해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충족됨. 따라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번~1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20건임.
 (순번 7번 및 1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뚜렷하여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해당 저작물들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순번 6번 내지 16번은 출판물을 불법복제한 PDF 파일을 판매 중인 게시물로, 불법복제물을 직접적으로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정보는 저작권침해정보로 보이는바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이견 없음.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번~1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번~28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 및 카페에서 영상물을 제공중인 사안이며, 총 16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순번 17번~28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7번~2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숙형 부장: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29번~22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70개 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방송, 영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레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5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레오'의 106분 전체분량을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1. 21.에 개봉한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임.
(영화 '독전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7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독전2'의 116분 전체분량을 37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1. 17.에 공개된 국내 액션 영화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순번 29번~228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9번~22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1호~2호(순번 1번~2번)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3호~5호(순번 3번~5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6호~16호(순번 6번~1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17호~28호(순번 17번~2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29호~228호(순번 29번~22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3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4쪽부터 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1호~205호(순번 1번~205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강태욱 분과위원장이 제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1. 31.

분과위원장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김춘식

위원 정경오